

조례안 심사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**최영미**]

목 차

1	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1
2	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4
3	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	7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/발의자 : 2023. 11. 11. / 최준규의원 대표발의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3.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홍섭의원)

-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다 면밀하고 원활하게 결산검사 하기 위해 거창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의 정수 조정(안 제2조)
1) 4명 ⇒ 5명
나. 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(안 제3조·제14조)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재무과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0. ~ 10. 16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최영미)

- 1조원에 육박하는 군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회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/발의자 : 2023. 10. 11. / 신미정의원 대표발의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3.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신미정 의원)

-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내실 있게
운영하기 위해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, 청탁 금지법
시행령이 개정('23. 8. 30. 공포·시행)된 사항을 우리군 의회 조
례에 반영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나.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 가능한 선물의 범위 등을 확대함(안 별표 1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
 - 2)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
 - 3)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11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0. ~ 10. 16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최영미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
-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과 범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[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/발의자 : 2023. 10. 11. / 김홍섭의원 대표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3.10.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홍섭의원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등에서 규정된 서류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서류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 정함(안 제4조)
- 다. 서류의 제출 방법에 대해 정함(안 제5조)
- 라. 원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정함(안 제6조)
- 마. 서류 제출 기간 등에 대해 정함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0. ~ 10. 16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최영미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
-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